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□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·운영 (안 제4조의2, 3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「국토기본법」(법률 제 18829호, 2022.2.3. 공포, 8.4. 시행)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,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개정 내용

- 초광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 및 초광역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초광역권계획에 추가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원칙, 세부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포함하는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초광역권계획 수립권자에게 배포
- 공무원 및 초광역권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초광역권 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수립주체가 협의하여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(입법의 수요자)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(시·도지사 등)
- (입법 파급효과) 초광역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없음